

# 의안검토보고서

1. 발의 또는 제출자 : 대전광역시장
2. 건 명 :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 
관한 조례안
3. 안 건 요 지 : 별 첨
4. 검 토 의 건 : 별 첨

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8년 1월 24일

행 정 자 치 위 원 회

전문위원 박 춘 용

#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

본 조례 안은 2008년 1월 11일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 1. 제안이유

「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2012년 새주소 의무사용에 대비한 도로명의 부여·변경 사항 등 도로명사업 본연의 목적달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걸친 도로명 부여 및 변경 대상 중 미협의 도로명은 대전광역시에서 결정하도록 함(안 제3조).
- 나.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하여 제작할 홍보물의 종류를 명시함(안 제5조).
- 다. 각종 교육·행사 등에 도로명주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).
- 라. 도로명주소의 생활화를 위하여 버스정류장, 철도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 새주소안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

함(안 제7조).

마. 도로명사업의 법령이 「대전광역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」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체계의 통일성 확보 차원에서 폐지함(안 부칙 제2조).

바. 대전광역시에서 운영중인 조례 중 사무실 위치 등의 표시가 있는 지번주소는 도로명주소로 개정함(안 부칙 제3조).

### 3. 검토의견

#### ○ 본 제정 조례 안은

2012년 새주소 의무사용에 대비한 도로명의 부여·변경 사항 등 도로명사업 본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#### ○ 먼저, 본문 제9조와 부칙으로 축조되어 있는 조례 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
조례 안 제2조 내지 제3조에서 도로구간 및 도로명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, 조례 안 제4조 내지 제5조에서는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을, 조례 안 제6조 내지 제7조에서는 도로명주소에 대한

교육 및 생활화 시책 추진 등의 의무 부여에 관한 사항을, 조례 안 제8조에서는 새주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, 부칙으로 「대전광역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하고, 내용 중 주소가 포함된 「대전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」 등 19개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### ○ 본 조례 안 검토결과

도로명주소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「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」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 등에 근거하여 법령에 중복된 내용은 최대한 억제하고, 자치법규 성문에 필요한 조문만을 반영하여 조례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법적 근거나 타당성 및 조례 안 축조 등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
다만, 「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에 의한 도로명시설의 광고의 경우 자치구청장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법률개정 건의 등을 통하여 시장도 광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